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880
----------	------

2025년 6월 10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5. 30.,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5. 5. 30.

다. 상정일자 : 제33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25년 6월 10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의정국장 직위(3급)를 신설하여 시의회사무처 통솔범위를 완화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의정국을 설치함(안 제2조제1항)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의정국장 직위를 신설함(안 제2조제2항)
- 의정국장의 사무분장을 명시함(안 제2조제4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5. 22.(목) ~ 2025. 5. 27.(화) (5일간)

나) 예고결과 :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의회사무처 인사담당관) : 원안동의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조직 내 중간 관리 기구(3급)를 설치하여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의회사무처의 탄력적 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25.5.20., 공포 및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음.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 「지방자치법」의 2022년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와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으나, 지방의회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성되어 중간 관리층이 부재한 상태로 유지되며 사무처 인사 운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에 처해 있음.
 - ※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사무처는 사무처장(1급)과 담당관 또는 과장(4급) 사이 중간 직급이 없어 사무처장이 1실 6담당관과 12개 전문위원실을 모두 통솔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에서는 대한민국 시도의회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지방의회 기능 강화 및 의회사무조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간직급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왔음.¹⁾

1) 대한민국시도의회회의장협의회 건의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문(2024.3.12., 2024년 제2차 임시회 안건채택)”,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촉구 건의안(2024.9.30., 2024년 제5차 임시회 안건채택)”,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2024.10.29., 2024년 제6차 임시회 안건채택)” 등.

- 이에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정원과 하부기구 수가 타 시·도에 비해 2배 이상 많고 사무처장의 통솔범위가 광범위한 광역의회부터 국장(3급) 직위를 신설해 통솔범위를 완화하고 효율적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방안을 도출했음.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방안>²⁾

- ▶ **효율적 업무추진 및 인사 운영을 위한 직급체계 개선**
 - (서울·경기) 중간 직급(3급) 설치를 통한 통솔범위 완화
 - (他 시·도) 선임 과장급 1개 직위 복수직급(4급 → 3·4급) 도입
- ▶ **전문위원 정수기준 개선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현행: 지방의원수 131명) 확대로 적정규모 전문위원 확보
- ▶ **특례시 역할 확대에 따른 사무기구 조직·인력 보강**
 - 통솔범위 완화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2명 이상 담당관(5급) 배치

- 이들 개선 방안은 지난 20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지방4대협의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조직 제도개선 특별전담반(TF)」에서 협의된 후('24.10.10.),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24.11.6.)에서 의결된 것으로,
 -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개선을 통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중간 직급(3급) 설치 이외에도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 확대,³⁾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의회사무기구에 2명 이상 담당관(5급)을 둘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회의록(' 24.11.6.)”, 10면 참조.

3) 전문위원 정수는 지방의원수를 기준으로 결정하나 최대 정수기준 상한이 131명으로 규정되어 이를 초과하는 경기도의 경우(의원수 156명) 전문위원 정수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었음. 이를 확대하여 경기도의회의 경우 적정규모의 전문위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3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국의 설치 및 의정국장 사무분장(안 제2조)

- 앞서 언급된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방안은 기구정원규정 개정으로 구체화되어 지난 '25년도 제21회 국무회의에서 가결('25.5.13.), '25.5.20. 공포 및 시행되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기존에 담당관을 둘 수 있었던 것에서 국·과·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기구정원규정 제15조제2항),⁴⁾ 국장을 3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게 되었음(기구정원규정 [별표 4] (제15조제1항 관련)).

<기구정원규정 [별표 4] 중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변경사항>

종 전

2.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구분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과장 또는 담당관
시·도	서울특별시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그 밖의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현 행

2.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구분		의회사무처장	국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과장 또는 담당관
시·도	서울특별시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경기도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그 밖의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 관련하여, 개정된 기구정원규정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두는 국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기구정원규정 제15조제5항),⁵⁾ 국을 설치하는 것과 그에 따른 분장사무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본 개정안은 이들 내용을 담고 있음.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의정국’을 두고(안 제2조제1항), 사무처장 외에 의정국장을 두며(안 제2조제2항), 의정국의 사무를 위원회 소속의 전문위원(12개)을 제외한 의회사무처 사무전반으로 분장하였음(안 제2조제4항).
- 의회사무처 ‘의정국’을 신규로 설치하고 그 산하에 기존의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언론홍보실·의사담당관·법제담당관·재정분석담당관·인사담당관·현장민원담당관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2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무처)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u>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u>	제2조(사무처) ①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두고, 사무처 밑에 의정국을 둔다.
② 사무처에 <u>사무처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u> 을 둔다.	② ----- 사무처장과 의정국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의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u>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조정,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u>

- 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② 특별시 및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 의회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국·과·담당관을, 그 밖의 시·도 의회사무처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특별시 및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 의회사무처에 두는 국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 및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0>

	2. <u>의회 언론보도 및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여론조사, 의회보 발행 등에 관한 사항</u> 3. <u>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외교활동 등 교류 협력 지원, 의회의 예산·결산, 계약·회계·물품·재산관리, 청사 관리·경비, 교섭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u> 4. <u>의안의 발굴·조사 연구 및 입안·검토,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입법·법률고문 운용, 법령·제도개선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u> 5. <u>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등 분석, 의안의 비용추계, 주요사업 분석·평가, 공청회·토론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사항</u> 6. <u>인사행정, 보수, 성과평가, 교육훈련, 인력개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u> 7. <u>의회 민원처리 업무계획 수립, 민원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제도개선 등 기타 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u>
--	--

- 한편, 개정안은 의정국장 소관 사무분장의 범위를 의회사무처 일반 부서에 한정하므로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8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며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게 되며, 그 외의 일반적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됨.

<의정국 설치에 따른 조직도 변경 예상>

현행		개정안	
사무처장 의정담당관 (6팀) 언론홍보담당관 (3팀) 의사담당관 (5팀) 법제담당관 (4팀) 재정분석담당관 (3팀) 인사담당관 (3팀) 현장민원담당관 (3팀) 전문위원 (12) (24팀)		사무처장 의정국장 의정담당관 (6팀) 언론홍보실 (3팀) 의사담당관 (5팀) 법제담당관 (4팀) 재정분석담당관 (3팀) 인사담당관 (3팀) 현장민원담당관 (3팀) 전문위원 (12) (24팀)	

4 종합검토

-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효율적 업무추진 및 인사 운영을 위한 기구정원규정의 최근 개정 사항을 적시에 반영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국장급 기구인 ‘의정국’을 설치하고 의정국장의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임.
- 신규 하부조직인 ‘국’을 설치하고 국의 명칭을 ‘의정국’으로 규정, 사무처장의 통솔범위가 완화되고 조직 운영 효율성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됨.
 - 의정국장은 기존의 의회사무처 6담당관 1실 조직 전반의 사무를 분장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12개 전문위원실은 종전과 같이 위원장의 지휘를 받고 그 밖의 일반적 사무는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게 됨.
- 참고적으로, 기구정원규정은 ‘국’을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며, 국의 소관 업무를 분담 수행하기 위해 ‘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기구정원규정 제6조제1항 및 제5항).⁶⁾
 - 기존에 의회사무처장 밑에 두었던 담당관의 경우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므로, 향후 ‘의정국’의 사무를 분장하는 하부조직을 ‘과’로 개편해 기구설치의 일반요건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과장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제외한다) 밑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부조직(과는 제외한다)을 둘 수 있다.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 4. 30., 2021. 1. 5.>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후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상 의회사무처 하부조직에 관한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그밖에, 본 개정안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이 동반되어야 함.
- 서울특별시에서는 의회사무처의 직급별 정원에 3급을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개정안과 동일 회기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입법예고하였으며⁷⁾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예정임.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사무처 직급별 정원 신·구조문 대비표(안 [별표 4](제4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4] _____ _____ _____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 정 기 관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 정 기 관
총 계	11,730						총 계	11,730					
(생략)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10,700						일반직 계	10,689					
(생략)							(현행과 같음)						
3급	26	16		1	9		3급	27	16	1	1	9	
(생략)							(현행과 같음)						
5급 이하 소계	10,205						5급 이하 소계	10,193					
(생략)							(현행과 같음)						
교육공무원 계	554						교육공무원 계	565					
(생략)							(생략)						
교수 등	476			476			교수 등	487			487		
(생략)							(현행과 같음)						

담당 연락처

02-2180-7688

7) 참고적으로,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제287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항은 서울시의 총정원 변동없이 시의회사무처 국장급 기구 정원 및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상계 조정함. 의회사무처 3급 정원 추가 및 직속기관(서울시립대) 교수 등 정원을 11명 추가하고 서울시의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12명 감축함. 한편, 의회 국장급 기구 정원 1명 추가로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1억 1,817만 원으로 추계되어 인력추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확보가 필요함.

-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12명
- 의회사무처 3급 정원 +1명, 직속기관 교수 등 정원 +11명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8명, 찬성 8명)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80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의정국장 직위(3급)를 신설하여 시회사무처 통솔범위를 완화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의정국을 설치함(안 제2조제1항)
- 나.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의정국장 직위를 신설함(안 제2조제2항)
- 다. 의정국장의 사무분장을 명시함(안 제2조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5. 22. ~ 5. 27.)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유성근 (☎2133-663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두고, 사무처 밑에 의정국을 둔다.”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사무처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사무처장과 의정국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조정,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 언론보도 및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여론조사, 의회보 발행 등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외교활동 등 교류 협력 지원, 의회의 예산·결산, 계약·회계·물품·재산관리, 청사 관리·경비, 교섭단체 지

원 등에 관한 사항

4. 의안의 발굴·조사 연구 및 입안·검토,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입법·법률고문 운용, 법령·제도개선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5.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등 분석, 의안의 비용추계, 주요사업
분석·평가, 공청회·토론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인사행정, 보수, 성과평가, 교육훈련, 인력개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의회 민원처리 업무계획 수립, 민원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제도
개선 등 기타 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중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를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무처) ① 서울특별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u>서울특 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 라 한다)를 둔다.</u>	제2조(사무처) ① ----- ----- <u>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 하 "사무처"라 한다)를 두고, 사 무처 밑에 의정국을 둔다.</u>
② 사무처에 <u>사무처장과 그 밖 에 필요한 직원</u> 을 둔다.	② ----- <u>사무처 장과 의정국장 및 그 밖에 필요 한 직원</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의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 무를 분장한다. 1. <u>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조정,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u> 2. <u>의회 언론보도 및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여론조사, 의회보 발행 등에 관한 사항</u> 3. <u>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외교활동 등 교류 협력 지원, 의회의 예 산·결산, 계약·회계·물품·재 산관리, 청사 관리·경비, 교섭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u> 4. <u>의안의 발굴·조사 연구 및 입 안·검토,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u>

제5조(시행규칙) <u>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리 및 입법·법률고문 운용, 법령·제도개선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u> <u>5.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등 분석, 의안의 비용추계, 주요사업 분석·평가, 공청회·토론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사항</u> <u>6. 인사행정, 보수, 성과평가, 교육훈련, 인력개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u> <u>7. 의회 민원처리 업무계획 수립, 민원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제도개선 등 기타 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u> 제5조(시행규칙) <u>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u>
--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의 직위 신설과 소관 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구 조정으로 인한 정원 변동 관련 비용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첨부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유성근(02-2133-6632)